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제 회)	

군 책 임 운 영 기 관 의 지 정 ·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용어를 접수개시일(변경공고는 시험기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고 기간 산정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축소 규정함으로써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공무원임용시험령,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서 규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고 기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 개정(안 제22조)

1)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기준을 ‘접수 20일 전에’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변경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규정함.

2)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에 대한 예외규정(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공고)을 신설하여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수 20일 전에”를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로, “응시원서 접수 7일 전에”를 “시험기일 7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 2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u>응시원서 접수 7일 전에</u>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① ----- ----- ----- ----- ----- ----- ----- ----- ----- ----- <u>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u> ----- ----- ----- ----- ----- ----- ----- <u>시험기일 7일 전까지</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u>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u>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② (생 략)	<u>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 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 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 시 공고하여야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5317